인천광역시 공고　　제2021-2080호

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

「인천광역시 공인 조례」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8. 2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등록 및 폐기사유 :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
2. 최초사용연월일 : 2021. 8. 2.
3. 폐기연월일 : 2021. 8. 2.
4. 등록(폐기) 공인명 및 인영 : 붙임 참고

등록 공인명 및 인영

인천광역시주소정보 위원회인
인천광역시주소정보위원회인

폐기 공인명 및 인영

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 위원회의인
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인